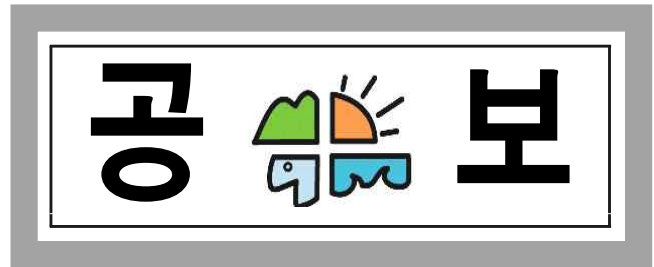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81호 2013년 6월 20일(목)

공 고

- 2013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..... 2
-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3
- 「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..... 5
- 「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..... 1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2013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

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13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지원대상 :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택 중 속초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경관주택
 - 가.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용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
 - 나.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
 - 다.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200㎡ 미만의 단독주택
2. 지원금액: 동당 5백만원 범위내 보조
3. 지원신청
 - 가. 신청대상 : 2012. 12월~2013. 11월 기간 중 완공된 주택
 - 나. 신청시기 : 공고일부터 2013. 11월 말일 까지
 - 다. 신청기관 :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
 - 라. 제출서류 :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(건축설계도, 건축현황사진 첨부)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(☎033-639-225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3년 6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교동 795-14번지 외 1필지
3. 공고기간 : 2013. 6. 20.~ 2013. 7. 5.(15일)
4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허가(신고)번호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교동	795-14번지	주	55	55	주식회사영동 가스산업	2013-신축허가-7 (2013. 3. 28.)	건축주 : 영동산업 주식회사
	795-15번지	도	408	408	주식회사영동 가스산업		

5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7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(033-639-245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치도 및 현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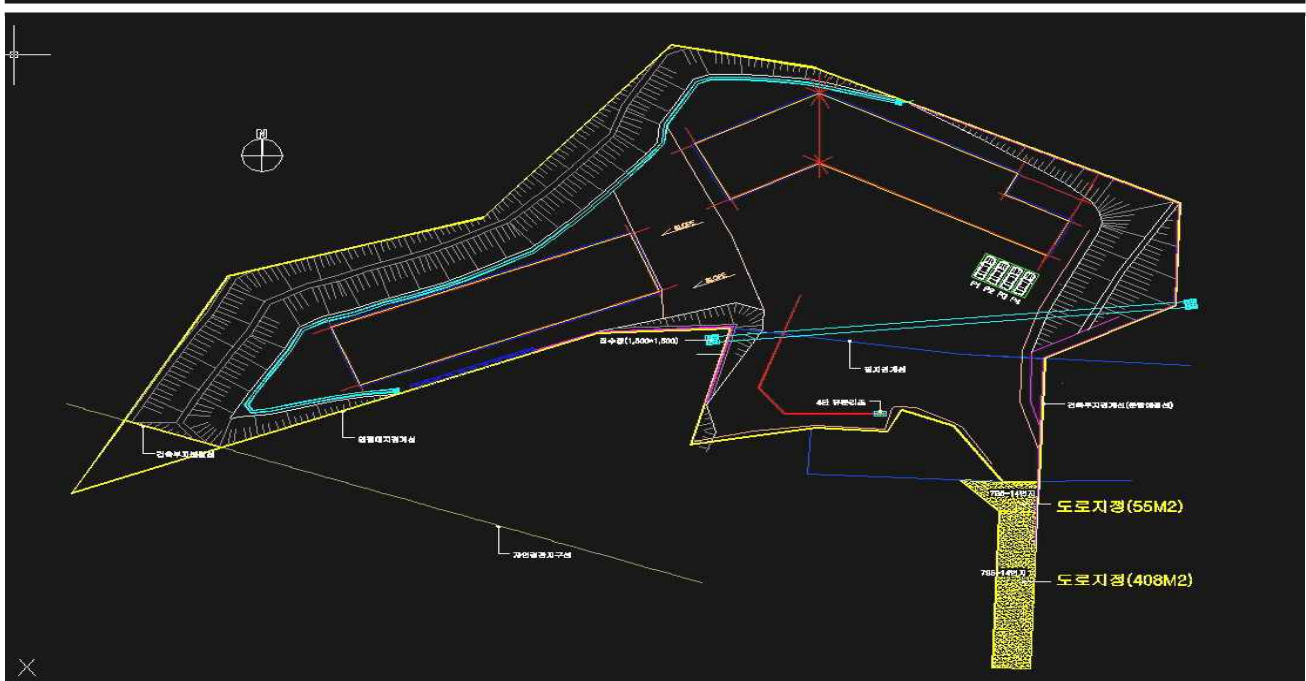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

「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(신설)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

o 위원회의 제적·기피·회피 등을 추가함 (안 제10조의 2)

-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,
-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는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(전화: 033-639-2049, FAX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(033-639-2049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또는활동”을 “또는 활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속초시에설치”를 “속초시에 설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”(이하”를 “ “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”(이하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별도로계리한다”를 “별도로 회계처리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연할수”를 “출연할 수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하여세입세출예산외”를 “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금융기관을말한다)”를 “금융기관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계년도”을 “회계연도”로, “시의회에제출”을 “시의회에 제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장의 직무등)”을 “(위원장의 직무 등)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「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, “여비를 지급”을 “여비를 지급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”를 “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계년도 6월말일까지시의회”를 “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절차밋”을 “절차 밋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2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속초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<u>활동</u> 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2조의 규정에 <u>따라</u> 속초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<u>활동</u> 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“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”이라 함은 속초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<u>속초시에 설치된</u> 기금을 말한다. 2. (생략) 3.“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”(이하 “운용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<u>기타</u>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. 4. (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”이라 함은 속초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<u>속초시에 설치된</u> 기금을 말한다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”(이하 “운용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<u>그 밖의</u>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.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구분)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계좌에서 <u>별</u> 도로 <u>계리</u> 한다.	제3조(기금의 구분)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계좌에서 <u>별</u> 도로 <u>회계처리</u> 한다.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적립기금은 다음 <u>각</u> <u>호</u>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수입금	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적립기금은 다음 <u>각</u> <u>호</u>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</u> 수입금

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시장은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략)

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사용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②기금은 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말한다)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6조의2(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

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사용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

② 기금은 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6조의2(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2. (생략)

3.기타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결산 및 보고 등) ①시장은 출납
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
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
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
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
다.

③ (생 략)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수) ①기금의 관리에
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
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
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
다.

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
「속초시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결산 및 보고 등) ① 시장은 출납
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
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
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
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
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수) ① 기금의 관리
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
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
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
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대해서는
「속초시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「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(신설)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

o 위원회의 제적·기피·회피 등을 추가함 (안 제7조의 2)

-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,
-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는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(전화: 033-639-2146, FAX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(033-639-2146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하는데필요”를 “하는데 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하여속초시체육진흥기금(이하”를 “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(이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제2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목적외”를 “목적 외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각각 “과반수”로, “과반수 이상의찬성”을 “과반수의 찬성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,

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정”을 “대해서는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정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

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계년도”을 “회계연도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회계년도”을 “회계연도”으로, “속초시의회제출하여”을 “속초시의회 제출하여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함께속초시의회”를 “함께 속초시의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 <u>하는데필요</u>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 <u>하는데 필요</u>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<u>속초시체육진흥기금</u>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<u>속초시체육진흥기금</u>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재원) ①기금은 다음 <u>각호</u>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<u>각 호</u>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기타 수입금</u>	3. <u>그 밖의 수입금</u>
②시장은 매 <u>회계년도</u> 마다 일정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매 <u>회계연도</u> 마다 일정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<u>각호</u>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<u>각 호</u>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타</u>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	5. <u>그 밖에</u>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②기금은 <u>목적외</u> 로 사용할 수 없다.	② 기금은 <u>목적 외</u> 로 사용할 수 없다.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(생략)	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기금은 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중 3분의 1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③ (생략)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⑤ (생략)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·2. (생략)

3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설>

② 기금은 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3분의 1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

제9조(간사 및 수당 등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기금결산) 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성과분석) 시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

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 및 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기금결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성과분석) 시장은 기금의 운영성과

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
함께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
와 함께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